공직선거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

[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. 5. 23. 2006고합101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외 2인

【검사】김성문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원길연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,000,000원에,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,000,000원에, 피고인 2, 피고인 3을 각 벌금 2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

.

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[이유]

]